



제429회 국회 (정기회)
제4차 행정안전위원회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
행정안전부를 명시〉

■ 백혜련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1536호)

2025. 9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정순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백혜련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07. 17.
3. 회부연월일 : 2025. 07. 1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,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,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‘행정안전부’로 명시하러
는 것임(안 제2조제4호).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중앙사무관장기관”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,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,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-----.
5. ~ 15. (생략)	5. ~ 15. (현행과 같음)

현행법 제2조제4호는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사무처인 국회사무처·법원행정처·헌법재판소사무처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를 그 기관과 소속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, 행정안전부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,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음.

중앙사무관장기관은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고(제5조)¹⁾,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(이하 “행정기관등”)의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며(제5조의2)²⁾,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고(제23조)³⁾, 종이문서의 감축을 위한 지침 시행 및 사용실태를 조사하며(제33조)⁴⁾,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령·제도를 개선하고(제36조)⁵⁾, 전자문서,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 조치를 추진하며(제50조)⁶⁾, 관할 행정기관 통합·연계정보통신망 구축(제52조)⁷⁾, 정보화 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정보화인력 개발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

-
- 1) 「전자정부법」 제5조(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)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·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2) 「전자정부법」 제5조의2(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)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.
 - 3) 「전자정부법」 제23조(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)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.
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 방안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.
 - 4) 「전자정부법」 제33조(종이문서의 감축)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거나 종이문서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 - 5)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)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·가공·이용·제공·보존·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.
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.
 - 6) 「전자정부법」 제50조(표준화)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,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7) 「전자정부법」 제52조(정보통신망의 구축)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등을 통합·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(제53조)⁸⁾ 등 관련 사무를 총괄하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⁹⁾에 대해서도 그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보임.

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도 포함됨을 고려할 때, 각 헌법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이 소관하는 공공기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문 의 처

02)6788-5339

8) 「전자정부법」 제53조(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)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화인력 개발계획 및 전문인력의 양성, 자격제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9)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자정부”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(이하 “행정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.
2. “행정기관”이란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3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 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- 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 - 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 - 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
4.~15. (생략)